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2072 지방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68,851,730원(가산세 포함), 2007. 4.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86,777,470원(가산세 포함), 2008. 1.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2,507,188,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26,913,26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중 14,358,22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 5.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2,952,760원의 징수처분 중 1,575,30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기재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redacted]구 B빌딩(지상 23층, 지하 8층)을 보유하였다.

나. C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3. 9. 3. [redacted] 상법에 따라 투자펀드로 설립된 [redacted]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로서 그 펀드 투자자들은 별지 1과 같다. D(이하 'D')과 E(이하 'E')는 2003. 8. 13. 투자목적회사로서 [redacted] 유한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C는 D, E의 각 발행주식 100%를 취득 · 보유하여 왔다. D, E는 2003. 8. 28.경부터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취득 · 보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6. 4.경부터 2008. 5.경까지 D, E에게 아래 표와 같이 배당금으로 합계 131,663,835,005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redacted]국과 [redacted]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8,437,018,460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redacted]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배당금 지급액(원)	원천징수 법인세(원)
2006년 4월	3,060,077,422	139,094,428
2007년 4월	3,856,776,666	175,308,030
2008년 1월	123,419,601,645	8,062,280,580
2008년 3월	1,196,145,212	54,370,237
2008년 5월	131,234,060	5,965,185
합 계	131,663,835,005	8,437,018,460

라. D, E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아래 표와 같이 각 6,546만 유로를 배당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5. 6. 29.부터 2008. 3. 12.까지 사이에 자본이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C에 지급하였다. C는 2008. 3. 14.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유한책임사원들에게 출자금 반환 및 이익 배당을 실시하였다.

배당결의일	배당금액(유로)	자본이득세	배당지급일	지급액(유로)
2005. 5. 6.	600,000	-	2005. 6. 29.	600,000
2005. 8. 1.	1,285,000	-	2005. 8. 2.	1,285,000
2006. 5. 29.	1,125,000	-	2006. 5. 31.	1,125,000
2006. 9. 8.	60,000	-	2006. 9. 12.	60,000
2007. 6. 29.	1,300,000	161,151.67	2007. 7. 3.	1,138,848.33
2008. 3. 11.	61,090,000	9,096,866.84	2008. 3. 12.	51,993,133.16
합계	**65,460,000**	**9,258,018.51**		**56,201,981.49**

마. [redacted]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D, E의 모회사인 C이고 C가 [redacted]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D, E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redacted]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 3. 2. 원고에게 ①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88,517,420원(가산세 포함), ②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867,774,750원(가산세 포함), ③ 2008 사업연도 원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징수 법인세 25,071,881,810원(가산세 포함), ④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69,132,670원(가산세 포함), ⑤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9,527,66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하는 ① 2006. 4.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68,851,730원(= 본세 62,592,490원 + 가산세 6,259,240원), ② 2007. 4.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86,777,470원(= 본세 78,888,610원 + 가산세 7,888,860원), ③ 2008. 1.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507,188,170원(= 본세 2,279,261,980원+ 가산세 227,926,190원), ④ 2008. 3.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6,913,260원(= 본세 24,466,600원 + 가산세 2,446,660원), ⑤ 2008. 5.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952,760원(= 본세 2,684,330원 + 가산세 268,43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2, 13, 14, 20, 21, 22, 24, 3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4항과 제98조 제1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93조 제2호와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정하고 있다.

한편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를,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각각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B빌딩에 관한 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D, E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B빌딩을 보유한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도록 하였다.

(2) D, E는 C와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동일하며 독립된 인적 구성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자금도 모두 C로부터 제공받았고, 2006. 4.경부터 2008. 5.경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redacted]의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곧바로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07. 7.경 C의 의사결정에 따라 곧이어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B빌딩의 매각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C로 보아 C에게 B빌딩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C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D, E가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한 것 이외에 표면적인 사업실적과 인적 · 물적 조직이 없어 그 자체로는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와 같은 D, E의 설립경위와 목적, D, E의 인적 · 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역, C와 D, E의 소득에 대한 지배 · 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D, E는 원고의 발행주식이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C가 D, E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였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D, E가 아니라 C라고 보아야 한다.

2) C가 '법인'으로서 한 · 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redacted]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제3조 제1항 (라)목과 (마)목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하고,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1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 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 ·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양 체약국은 거주지국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거주지국은 자국의 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과 같은 제도를 두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그것은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단체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을 받는 '거주자'인지는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라고 하여 당연히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redacted] 조세조약 제1조와 제4조 제1항 역시 체약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독 조세조약은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가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는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하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의하면 투과과세 단체를 소득 귀속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이를 무시한 채 그 구성원들을 소득 귀속의 주체로 보아 원천지국과 그 구성원들의 거주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지국에서 발생하여 거주지국에 귀속된 소득이 주소 등과 같은 장소적 관련성을 이유로 거주지국의 포괄적인 과세권에 복속하는 이상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이 포괄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지국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제한 없이 과세권을 행사한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redacted] 조세조약의 목적이나 양 체약국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투과과세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에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그 구성원이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redacted]의 어떠한 단체가 [redacted]에서는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그 구성원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는 조세조약상 [redacted]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redacted]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redacted]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가 '법인'인 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주자이어야 한다. [redacted]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마)목은 법인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의한 '법인'이란 어떤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단체 단계에서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세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redacted]의 투과과세 단체가 [redacted]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redacted]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redacted]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적회사로서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실, 그런데 C는 [redacted]의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주소와 같은 장소적 관련성을 이유로 하는 포괄적인 납세의무라고 볼 수 없는 영업세법(Gewerbesteuergesetz)에 따른 영업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이며 C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구성원이 직접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한편 C의 구성원은 [redacted]인, [redacted]인 및 [redacted]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C는 [redacted]의 투과과세 단체로서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redacted]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redacted]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C 구성원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C를 [redacted]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취급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뿐이다.

3)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적용할 세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C가 부당하게 [redacted]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D, E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간접투자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여 조세조약을 남용하였으므로, [redacted]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redacted]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

(가) C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redacted], [redacted] 크, [redacted]아 각국의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 취급되므로, 이중과세 방지, 기존의 과세관행,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C 구성원들이 직접 투자한 경우와의 형평성,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 원칙과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C 구성원들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C 구성원 중 [redacted] 거주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redacted] 조세조약, [redacted]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redacted] 정부와 [redacted]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redacted]아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redacted] 정부와 [redacted]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약'을 적용하여 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야 한다(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C 구성원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redacted] 조세조약만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redacted] 거주자 및 [redacted] 거주자인 F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redacted]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C 구성원 중 [redacted] 거주자인 F은 [redacted] 투자펀드인 G(이하 'G'라 한다)의 자산운용사에 불과한데, G는 [redacted] 및 [redacted]크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고 G의 최종 투자자들은 모두 [redacted] 거주자이므로, C에 귀속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 중 [redacted]크 거주자인 F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G의 투자자인 [redacted]거주자들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C 구성원 중 [redacted]거주자들은 모두 이 사건 배당소득 중 [redacted] 거주자들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이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redacted]의 투과과세 단체로서 [redacted]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구성원은 [redacted]인, [redacted]아인 및 [redacted]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급 당시 C 구성원의 거주지국별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고, 거주지국이 [redacted]인 구성원은 [redacted]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주지국	2006. 4.	2007. 4.	2008. 1.	2008. 3.	2008. 5.
[redacted]	95.42%	83.97%	83.97%	83.97%	83.97%
[redacted]크	0%	11.45%	11.45%	11.45%	11.45%
[redacted]아	4.58%	4.58%	4.58%	4.58%	4.58%
합계	100%	100%	100%	100%	100%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은, 각 그 지급 당시 거주지국이 [redacted]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redacted]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5%[법인세율 13.64%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1항, 제17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율의 100분의 10인 법인세할 주민세율 1.36%를 합한 것이다], 그 외 [redacted]아 및 [redacted]크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상 세율인 25%와 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율인 2.5%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redacted]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채권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배당)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D, E는 뚜렷한 사업목적이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 E가 [redacted]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redacted]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C가 자회사인 D, E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면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규정된 제한세율인 15%는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D, E를 이용하여 행한 이 사건 투자의 형태는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C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것까지 배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소득 귀속 주체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득 귀속 주체가 거주지국의 국내법상 투과과세 단체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시한 채 그 구성원들을 소득 귀속 주체로 보아 원천지국과 그 구성원들의 거주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C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그 거주지국은 [redacted]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redacted] 조세조약만이 적용되고 C 구성원들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그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나) 또한 C가 [redacted]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이므로 그 구성원들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redacted]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C 구성원 중 [redacted] 거주자가 아니라 [redacted]크 거주자인 F이 [redacted]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C 구성원 중 [redacted] 거주자들에 대하여 [redacted]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나머지 거주자들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에 따른 25%의 세율과 구 지방세법에 따른 2.5%의 법인세할 주민세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처분 기준 시기	당초 과세액	정당세액	취소세액
2006. 4.	68,851,730	32,352,669	
2007. 4.	86,777,470	46,295,783	
2008. 1.	2,507,188,170	1,211,745,188	
2008. 3.	26,913,260	14,358,228	12,555,032
2008. 5.	2,952,760	1,575,301	13,774,652
합계	2,692,683,390	1,306,327,169	26,329,684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고는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2008. 1.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에 대한 것이다. 2006. 4.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2007. 4.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 내용은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과 동일하다]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단서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97조의3 제1, 2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지 관할 시·군에 그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하는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일이자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의 원천징수일인 2006. 4.경, 2007. 4.경, 2008. 1.경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 당해 특별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2006. 5. 10., 2007. 5. 10., 2008. 2. 10.(위 2006. 4.경, 2007. 4.경, 2008. 1.경이 속하는 달의 각 다음 달 10일이다)의 다음 날인 2006. 5. 11., 2007. 5. 11., 2008. 2. 11.이다. 그런데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3. 18.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의 납부의무는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의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2006. 4.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68,851,730원(가산세 포함), 2007. 4.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86,777,470원(가산세 포함), 2008. 1.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2,507,188,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증액경정된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세(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이 당해 증액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남대문세무서장이 각 법인세(원천징수분)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2011. 3.경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6. 4., 2007. 4., 2008. 1. 귀속 각 법인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징수처분(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나머지 각 징수처분(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의 취소청구 부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별지 1

[원고의 배당지급 당시 C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현황]

2006.4.	2006.9.	2007.4.	2007.10.	2008.4.	2008.12.	국적
H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I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J	좌동	N/A (해당없음)	N/A	N/A	N/A	[redacted]
K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L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M	좌동	좌동	좌동	좌동	N/A	[redacted]아
N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O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P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Q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R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S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T A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U	N/A	N/A	N/A	N/A	N/A	[redacted]
V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W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
N/A	X	N/A	N/A	N/A	N/A	[redacted]
N/A	N/A	F	좌동	좌동	좌동	[redacted]크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별지 2

관계 법령

▣ 한.독 조세조약

제1조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급료지불에 대한 조세,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및 이들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한다(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2. 일방체약국이 어느 때라도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목적상 일방국의 적용당시의 법에 따른 의미와, 동 국가의 다른 법하에서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그 국가의 적용가능한 세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제27조 (특별한 사안에서의 협정의 적용)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조(배당) 제2항, 제11조(이자) 제2항, 제12조(사용료) 제2항 및 제21조(기타소득)의 규정에 언급된 제한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채권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배당), 제11조(이자), 제12조(사용료) 및 제21조(기타소득)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30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끝.